

사전심의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40일	
신청인		성명				생년월일	
		주소				(전화번호:)	
사업예정지							
사업 개요	업 종	업종명				주생산물	
		분류번호				사용원료	
	규 모	부지 면적					
		건축 면적	제조시설: m ²		부대시설: m ²		

「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지방도시계획위원회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. 건축위원회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3. 경관위원회: 「경관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.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. 지방산지관리위원회: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.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: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방법 에 따라 작성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※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-----	--

생산 공정 흐름도

공장인 경우 생산시설·배출시설 명세

시설명	용량 및 규격 (HP・kW・m³)	수 량	배출오염물질		비 고
			종 류	배출량	

※ 작성요령: 배출시설은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시설을 적습니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